

第 27 回達西區議會(臨時會) 内務委員會會議錄(附録) 第 1 號

大邱直轄市達西區議會事務課

目 次

- 1. 大邱直轄市達西區顧問辯護士運營條例中改正條例(案) 45 面
- 2. 大邱直轄市達西區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(案) 51 面
- 3. 大邱直轄市達西區決算檢查委員選任 및 運營에 關한 條例中改正條例(案) 54 面
- 4. 94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(案) 57面

대구직할시달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(안)

| | |
|----|--|
| 의안 | |
| 번호 | |

제출년월일 : 94. 7.

제 출 자 : 대구직할시달서구청장
(기획감사실)

1. 제안사유

- “국가소송사건수임변호사보수규정(법무부 훈령)” 및 “대구직할시법률고문운영규칙”이 개정됨에 따라 소송비용지급기준을 시와 균형을 유지하여 현실에 맞도록 조정
- 고문변호사의 임기를 2년으로 연장하여 행정의 낭비적 요소 제거
- 조리상 불합리한 내용 정비

2. 주요골자

- 가. 고문변호사의 임기를 “1년”에서 “2년”으로 연장(안 제4조)
- 나. 고문변호사에 대한 수당지급규정 신설(안 제5조의2)

다. 소송비용지급기준 상향 조정(안 별표)

○ 민사소송 착수금

• 신청사건

- 단순신청 : 50,000원 → 100,000원 이내
- 변론있는 신청 : 100,000원 → 150,000원 이내

• 본안사건(소송물가액 기준)

- 500만원미만 : 160,000원 → 250,000원 이내
- 500만원이상~1,000만원미만 : 250,000원 → 400,000원 이내
- 1,000만원이상~2,000만원미만 : 400,000원 → 600,000원 이내
- 2,000만원이상~5,000만원미만 : 800,000원 → 1,200,000원 이내
- 5,000만원이상~1억원미만 : 1,500,000원 → 2,000,000원 이내
- 1억원이상~2억원미만(신설) : 2,000,000원 → 2,500,000원 이내
- 2억원이상(신설) : 3,000,000원 이내

- 중요사건 : 1,000천원 → 1,500천원

3. 관련근거

- 국가소송사건수임변호사보수규정(법무부 훈령)
- 대구직할시법률고문운영규칙

4. 개정조례(안) : 따로 붙임

5. 신·구조문대비표 : 따로 붙임

대구직할시달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(안)

대구직할시달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제2호중 “구를”을 “구 또는 구청장을”로 한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임기)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고문변호사가 제3조제1항 각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.

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2(수당) ①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수당은 매월말일에 지급한다. 다만,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.

제6조제1항중 “비용은” 다음에 “별표의”를 삽입한다.

[별표] 소송비용지급기준은 “별지”와 같이 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고문변호사는 재위촉할 때까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.

[별표]

소송비용지급기준

| 구분 소송별 | 지 급 기 준 | | |
|-------------|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| 내 용 | 착 수 금 | 승소사례금 |
| 민 사 소 | 1. 신청사건 • 단순신청 • 본안관련 신청 • 변론있는 신청 | 100,000원 이내 100,000원 이내 150,000원 이내 | 없 음 |
| | 2. 본안사건(소송물가액 기준) • 500만원미만 • 500만원이상 1,000만원미만 • 1,000만원이상 2,000만원미만 • 2,000만원이상 5,000만원미만 • 5,000만원이상 1억원미만 • 1억원이상 2억원미만 • 2억원이상 | 250,000원 이내 400,000원 이내 600,000원 이내 1,200,000원 이내 2,000,000원 이내 2,500,000원 이내 3,000,000원 이내 | 60%이상 승소확정의 경우 착수금에 승소 비율을 곱한 금액 |
| 송 | 3. 중요사건(승패에 따라 당시의 행·재정상 중요한 영향을 미칠 사건) | 1,500,000원 이내 | " |
| | 4. 상고심 | 본안사건 착수금의 1/2이내 | " |
| | 5. 환송심 | 본안사건의 착수금의 1/2이내 | " |

| 구분 소송별 | 지 급 기 준 | | |
|------------------|---|---|-----------------|
| | 내 용 | 착 수 금 | 승 소 사 례 금 |
| 행 정 소 송 | 1. 신청사건 | 민사소송에 준함 | 없 음 |
| | 2. 본안사건 • 소송물가액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 • 소송물가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| 민사소송에 준함 400,000원 이내 | 민사소송과 동일 |
| | 3. 중요사건 (민사소송에 같음) | 1,500,000원 이내 | " |
| | 4. 상고심 | 400,000원 이내 | " |
| | 5. 환송심 | 본안사건 착수금의 1/2이내 | " |
| 기 타 | 1. 인지대 | 실 액 | |
| | 2. 송달료 | 실 액 | |
| | 3. 검증비 | 실액(다만, 현장검증때 소송대리인이 수행할 경우에는 30,000원을 별도 지급) | |
| | 4. 감정료 | 실 액 | |
| | 5. 출장비 및 여비 | "대구직할시달서구 지방공무원여비조례" 중 4급공무원 해당액 | |
| | 6. 복사료등 기타 경비 | 실 액 | |

